

2026년 「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(사)한국산업진흥협회가 수행하는 「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에 참여하실 충청북도 소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【 아 래 】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
모집기간	2026. 2. 2. ~ 예산 소진 시까지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(제조업, 스포츠 클럽 운영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, 보관 및 창고업) *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여야 함 · 진천군 소재 중견기업(제조업, 스포츠 클럽 운영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, 보관 및 창고업) *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함 · 진천군 소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·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이어야 함 · 진천군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*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·나·다·라·마·바목에 해당하여야 함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충청북도 및 인근 시·도에 거주하는 20세 ~ 75세 이하 단시간(1일 최대 6시간) 근로자 신규채용*시 인건비 일부(최저시급의 40%→16,520원/1일) 지급 * (사)한국산업진흥협회를 통한 구인·구직 연계자 · 3개월 이상 고용 후 참여자 60일 이상 만근시 근속 인센티브 200,000원 지급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기업용) 1부 [붙임 서식1] 2.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 서식2] 3. 참여 요건 확인서 및 참여 협약서 각 1부 [붙임 서식3, 4] 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(신청일 기준) 5.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6.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1부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mss.go.kr 에서 발급가능) ※ 위 서류는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지연됩니다. 7. 사회복지서비스업·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1부 (해당시) 8.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[붙임 서식12]
접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- 우편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99(문화동) 2층. (사)한국산업진흥협회 - 이메일: koida@koida.or.kr / 홈페이지: www.koida.or.kr (협회소식>공지사항) ※ 메일 제목에 '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(진천군)' 명시 ※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☎ 043) 222-0801

<p>진행절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차 : 서류심사 (제출서류 및 참여 요건 등 확인) · 2차 : 참여자 연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참여자 연계시 기업 요구에 따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참여자가 연계되지 않은 (해당 기업에 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) 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※ 연계가 확정된 기업은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(270일 이내)
<p>지원요건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호 합의된 대상자와 1일 4시간 내외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계약 및 근로 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함. 2.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신규 채용 근로자 포함 총 근로자수(고용보험 가입기준)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상 인원수를 기준하며 인원 변동 시 관련 서류 제출 3.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이후 확인 되더라도, 그 승인은 취소되며,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'부당이득'으로 환수 조치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로 사유 확인 제외 4. 다른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하여야 함
<p>지원한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당 연인원 2,700명까지 - 근로자 1인당 근로일 270일까지 ▶ (예시) 1명 × 270일 = 270명 ☞ 가능 10명 × 270일 = 2,700명 ☞ 가능 1명 × 300일(270일 초과) = 300명 ☞ 불가 15명 × 200일 = 3,000명 ☞ 불가
<p>유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· 참여자와 미연계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· 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지급 후 지원금 신청 · 신청일 기준 기채용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· 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서류 중 사업장(주)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※ 참여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서 제출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업주 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-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

참여 요건 확인서

본 사업장은 『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』 지침 등에 따라 아래의 제외 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취소,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확 인 사 항	사업주확인 (○, ×)
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며 참여가능 업종(업종 :)인 사업체	
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·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	
③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제3호가목·나목·다목·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	
④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사업체	
⑤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(인원적 감원) 있는 사업체	
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	
⑦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)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	
⑧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)과 도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	

위와 같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월 일

기 업 명 :

대 표 자 :

(인)

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장 귀하

